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
[대법원, 1992.2.25, 91도3004]

【판시사항】

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당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배포한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【판결요지】

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행한 금품배포 등 행위가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, 제39조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상 고 인】 피고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종화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

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의원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위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1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지방의회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, 제39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간다.

피고인이 정당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당원을 상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한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는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, 정당의 공천도 받기 전이라든가 당원 상대의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.

또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민주자유당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,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배만운(재판장)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김석수